새로운 도약,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

2026. 9. 14.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 안 명	심사결과	비고
4615	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

의안 번호	4615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심사보고서

2026. 9. 14.

의회운영위원회

1. 회부안건

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8월 27일, 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8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

다. 상정 및 심사일자 :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 및 심사·의결(2026. 9. 14.)

3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의원 신분증에 청사 출입증 기능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. 의원 신분증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분증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3조의 제목을 (신분증 규격・제식 및 색상)에서 (신분증 규격・제식 및 기재사항 등)으로 개정함.(안 제3조제명).

○ 의원 신분증에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김현아)

○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에 스마트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○ 첫째, 의원 신분증의 기능 확대 및 효율성 제고임.

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의원 신분증에 출입 관리 등 전자적 기능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,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고 청사 보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○ 둘째, 조문 체계의 정합성 확보임.

현행 제3조(신분증 규격・제식 및 색상)의 제목을 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,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정비로

○ 의원 신분증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으로,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**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　　략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: 없　음

8. 기타특이사항 : 없　음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호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신분증 규격·제식 및 색상)”을 “(신분증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신분증 규격·제식 및 색상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신분증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.